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5. 1.



고용창출

신규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

재직자 처우개선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

기업이 어려울 때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 본 안내책자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담당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하용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 매출액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Contents

I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2. 고용장려금 찾기	3
II. 고용촉진장려금	5
1. 사업개요	6
2. 지원 절차	6
3. 지원 내용	7
4. 지원제외 근로자	11
5. 지원제외 사업주	13
6. 고용조정 제한 의무	14
III. 고용안정장려금	15
1. 사업개요	16
2. 지원 절차	17
3. 지원 유형	19
4. 지원 제외 근로자	21
5. 지원 제외 사업주	22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23
IV. 고용유지지원금	37
1. 지원 개요	38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42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49



V.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53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4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58
3. 고령자 고용지원금	60
VI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63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4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66
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68
VIII.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1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2
VIII. 참고사항	75
1.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76
2. 부정행위 조치	78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79
IX.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81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 2. 고용장려금 찾기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워리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공모형
- ▣ 워리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공모형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공모형

청년 고용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 고용안정 장려금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2. 고용장려금 찾기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



①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
②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4
③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60
④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72

2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32
②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3
③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29
④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58
⑤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3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38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고용은 유지하더라도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49

4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4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66
③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68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II

고용촉진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내용
4. 지원제외 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6. 고용조정 제한 의무

1. 사업개요



- **(고용촉진장려금)**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

2. 지원 절차



사업주



①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② 지급 및 지도·점검

3.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다만, 지원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8~9p 참고)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구 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 유형 중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 유형의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써 고용 보험 피보험자 기입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이상의 사람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II. 고용촉진장려금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9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제5호가목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1	지방관서별 자체 선정·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2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지원수준 및 한도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단, 사업주가 신청기간(고시 제19조제2항) 위반시에는 지원제외 대상임)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

- (지원한도)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⑧ 증증장애인 ⑨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 ⑤ 결혼이민자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건설일용직 ⑨ 장애인 ⑩ 니트(NE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⑥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를 이수한 사람
- ⑦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⑧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고령자

-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④ 일반유통·무도유통·기타주점업, 캠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6. 고용조정 제한 의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III

고용안정장려금

- 1. 사업개요
- 2. 지원 절차
- 3. 지원 유형
- 4. 지원 제외 근로자
- 5. 지원 제외 사업주
-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위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2. 지원 절차



공모형 ① → ② → ③ → ④ → ⑤ **요건형** ④ → ⑤

(1)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인프라 구축 견적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2)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 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 <p>〈지원인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월 30만원(지원대상 근로자수의 30% 지원) * 최대 100명 한도(단,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필요 (공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p>〈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재택 · 원격 · 선택근무 활용시 월 최대 30만원,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시 월 최대 40만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를 도입·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p>〈인프라구축 기업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구축비) 재택 · 원격 인프라는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포함) 인프라는 최대 750만원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불요 (요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p>〈단축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p>*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p>

유형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파견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p>〈해당 근로자 1인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지원금) 월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급 ※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월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사례 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지원제한 ▶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1)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제외 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적용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③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가능
-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5. 지원 제외 사업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요건형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 제한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급 제한



지원요건(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임신일로부터 출산 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및 연장근로 제한
※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

유형	1개월 지급액	지원대상
장려금	최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임금감소액보전금	최대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은 부지급(장려금만 지급)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활용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월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지원인원 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음



지원기간 및 신청

- **(지급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 지원
- **(지급신청)**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공모형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증진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일반·무도유홍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지원요건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②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승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
- ③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④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
-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시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 **(지원 인원 및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수의 30%, 최대 100명 한도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 예시 : '24.1.10.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의 '23.12.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이었으나, '24.2.1. 단축 시행 후 100명 중 10명이 퇴사하여 '24.2.29. 기준 90명이 되었다면 '24.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명(단,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24년 2월 지원 인원은 27명(지원 대상 근로자 90명 × 30%)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달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중 단축 시행 해당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중인 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을 의미

**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내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단축 시행 직전 달의 말일 기준 재직 중인 피보험자를 의미(단, 예술인·노무제공자 제외)

-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및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④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자)**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자는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단축 시행 후 1년 기간 중 각 해당월의 시작일부터 종료일(1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 중인 근로자임(해당월 중간 입·퇴사 근로자는 실근로시간 산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와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 근로자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실근로시간 단축 산정방식**

(단축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소수점 이하 버림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로 나눔

*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임



지원기간 및 신청

- **(지급기간 및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공모형



1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게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원격근무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근태관리 기준
재택·원격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시차출퇴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선택근무제를 활용한 1개월간 총 6시간을 단축(단축한 날의 단축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				36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2배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함

지원기간 및 주기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

- (지원기간 및 주기) 유연근무 활용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VI. 고용환경개선지원 / 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참조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형]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②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례 지원기간(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제한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사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③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혜용하고,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제출 서류

- ❶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지원금만 해당)
- ❷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출산 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파견 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파견근로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 ❸ 업무분담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근로자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업무분담자 지정 인사명령서,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지급사실 증명자료(임금 명세서, 임금대장 등)


지원수준
①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월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월 200만원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추가지원)	월 10만원

*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40만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본지원	월 3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적용	월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원

④ 업무분담 지원: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기간 및 주기

❶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 (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❷ 대체인력 지원금

- (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
- (주기)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 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

*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❸ 업무분담 지원금

-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 (주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100%를 3개월 단위로 지급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IV

고용유지지원금

- 1. 지원 개요
-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1. 지원 개요



● 유형별 지원기준

유형		지원 기준	
유급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제21조, 시행규칙 제23조~제32조의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휴직		
무급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에도 무급 휴업·휴직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주가 사전 승인된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령 제21조의2~제21조의3, 시행규칙 제34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휴직		

● 유형별·업종별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6.6만원 (연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특별 고용지원 업종, 고용 위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 근로시간 단축율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우선지원 7만원, 대규모 6.6만원 (연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계속고용 의무기간 = 최소한 ⑥ ~ ⑩)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까지(고용조정 제한 기간)를 말함

계속고용 의무(고용조정 제한) 기간				
단계	고용유지 조치계획	고용유지조치실시 (휴업·휴직)	고용조정 제한기간	지원금
신고⑥		첫날⑥ ~ ⑩종료일	~1개월⑩	⑩신청
예시	3.31	4.1 ~ 4.30	~5.31	

● 지원 제외

- ❶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이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외됨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
- ❷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채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③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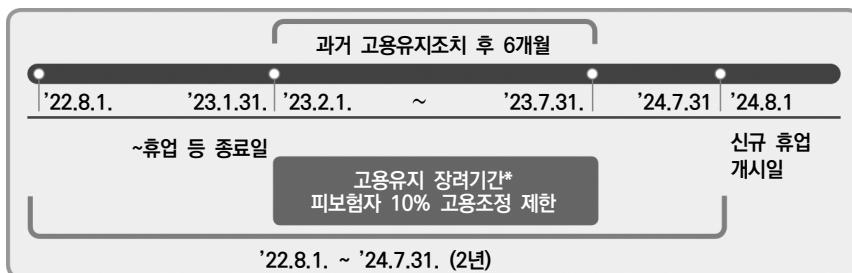
- 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 구조상의 단순 반복적 결과인 경우, 경기변동·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2023년 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가피성 인정'에 대해 지방관서장이 적극적으로 판단하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타 경영 및 고용 여건 제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음

④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고용조정한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금번 신규 지원 제한
 - *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1회 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별로 고용조정 비율 판단

(사례) 신규 휴업 개시전 2년이내 고용유지조치가 한차례 있었으며, '23.1.31. 종료

- '23.1.31.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고용유지 장려기간('23.2.1.~'23.7.31.) 중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가 10% 이상이면 지원 제한
단, '23.2.1. 이후에 채용되었다가 고용조정된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 장려기간)** 이전 2년 동안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의 종료일 이후 6개월 기간(단, 신규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전까지만 적용)을 의미하며, 동 기간내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로 신규 고용유지조치 지원 제한 판단

고용유지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 ①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 ②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 ③ 고용유지조치계획을 50%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부지급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❶가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❷한 후 휴업·휴직을 실시^❸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❹ 사업주

❶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이상 감소한 경우
-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③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 (매출액 비교 시점)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적용시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총 매출을 운영한 개월 수로 나누어 비교
-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적용시 기준달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최근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 (파견·수급 사업주)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 제출)

-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계획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노사 협의 증명서류 첨부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 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갑자기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사후 신고시 인정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함
 - *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 방법)

- 사업주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휴업 등의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를 거치면 됨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 변경 계획의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단축,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의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생략 가능
- 근로자대표와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협의·합의한 후 세부 실시계획(휴업·휴직별 실시기간·시간, 지급예정금품, 해당 기간 중 근로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한 근로자별 확인서 작성·비치
 -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노사간 적절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임

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휴업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총근로시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휴직	1개월 이상의 계속하는 유급 휴직을 실시

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 지원수준

구분	일반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유급 휴업·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1일 한도 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3/4 1일 한도 7만원 (단, 대규모기업은 6.6만원)

● 지원기간

- (유급휴업·휴직) 모든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1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曆)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직전 3개월에서 직전 1개월까지 기간 내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총근로시간으로 봄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기간

휴업·휴직 각 유형별 고용유지조치 일수를 합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사업주가 동일한 날에 근로자별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2

휴직



지원대상

● 휴직의 의미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1개월이상)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등 지급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 경우 휴직은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실시하게 된 ‘휴업’의 개념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기간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사업주가 동일한 날에 근로자별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고 이후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결과에 대해 지원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한 경우
-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한 경우
- ③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 제3호는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② 다음의 무급휴업·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 규모별(전체 피보험자 수)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체 피보험자수</th><th>실시 기준</th></tr> </thead> <tbody> <tr> <td>19명 이하</td><td>전체 피보험자수의 50% 이상</td></tr> <tr> <td>99명 이하</td><td>10명 이상</td></tr> <tr> <td>100명~999명 이하</td><td>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td></tr> <tr> <td>1000명 이상</td><td>100명 이상</td></tr> </tbody> </table>	전체 피보험자수	실시 기준	1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수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99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
전체 피보험자수	실시 기준									
1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수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99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규모별(전체 피보험자 수)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체 피보험자수</th><th>실시 기준</th></tr> </thead> <tbody> <tr> <td>99명 이하</td><td>10명 이상</td></tr> <tr> <td>100명~999명 이하</td><td>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td></tr> <tr> <td>1000명 이상</td><td>100명 이상</td></tr> </tbody> </table>	전체 피보험자수	실시 기준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99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전체 피보험자수	실시 기준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명~99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사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실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최근 2년간 지원된 고용유지조치 종료후 6개월 내 전체 피보험자수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 제한(40~41페이지 참조) ('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 * 다만,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승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 지원금 수준 결정

- 근로자별 평균임금 50%(1일 한도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준 결정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한도 지원, 근로자별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 비용에 대해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내 지원(사업주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

- 무급휴업·휴직 실시 후 사업주가 지원금 승인 결정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을 고용유지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

-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승인 여부 결정
- 필요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소재지 관할 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 (필요시) 지청별 심사위원회 개최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V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3.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유형 | 기업지원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신청절차

-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1 유형 II 기업지원금·청년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요건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 (청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도약장려금을 참여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 (근로조건 등)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내용

-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청년)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
(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 신청
 -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신청절차

-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일정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 다만, 직전연도 기준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한 기업은 제외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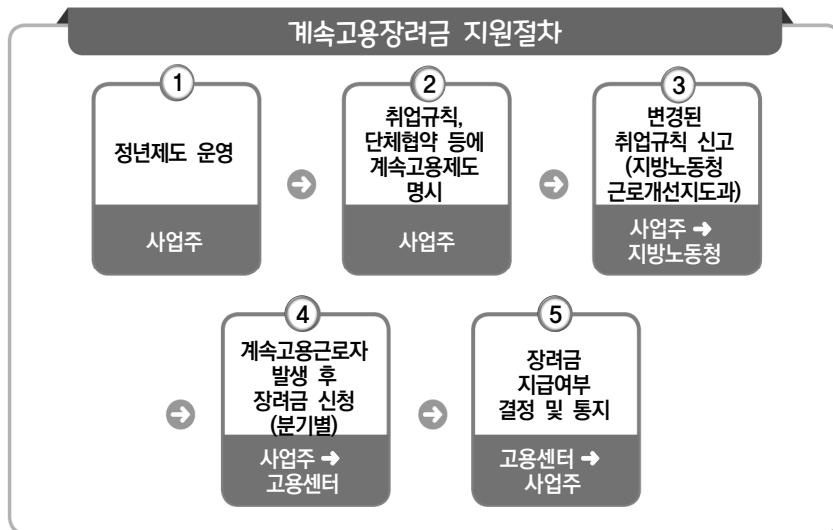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기능) ③ 월 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자 ④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되,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전이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3. 고령자 고용지원금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기업요건)

-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②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 기준)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 **(지원제외자)**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최저임금 미만자, ④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지원수준 및 기간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신청기간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
 -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므로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전월 말일 기준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지원내역	지원한도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주40시간 이상	60만원	138만원		
	주30시간 이상	55만원	121만원		
	주20시간 이상	40만원	86만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52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원별기준	40명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지원금(월)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시기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해당 월분에 대하여 해당월 14일 이전까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매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매 분기 시작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교재교구비·임차비 무상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60~90% 범위내에서 한도액 3억원(사업주 단체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억원(공동형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는 5천만원^{**}(교체시는 3천만원까지) 까지 무상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단독형 4억원, 공동형은 20억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7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에게 시설 임차비 지원(소요비용의 80%, 연 3억 한도)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7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8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7

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증견기업



지원요건

-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인프라) 3년, (사용료 방식 인프라) 개별 약정기한(최대 3년)

종류	지원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태관리 시스템<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시스템<ul style="list-style-type: none">-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하되,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 최대 750만원을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8/10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인프라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7/10

* '23년 이전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경우는 '23년도 고시 [별표 10]의 규정에 따름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



문의



-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VII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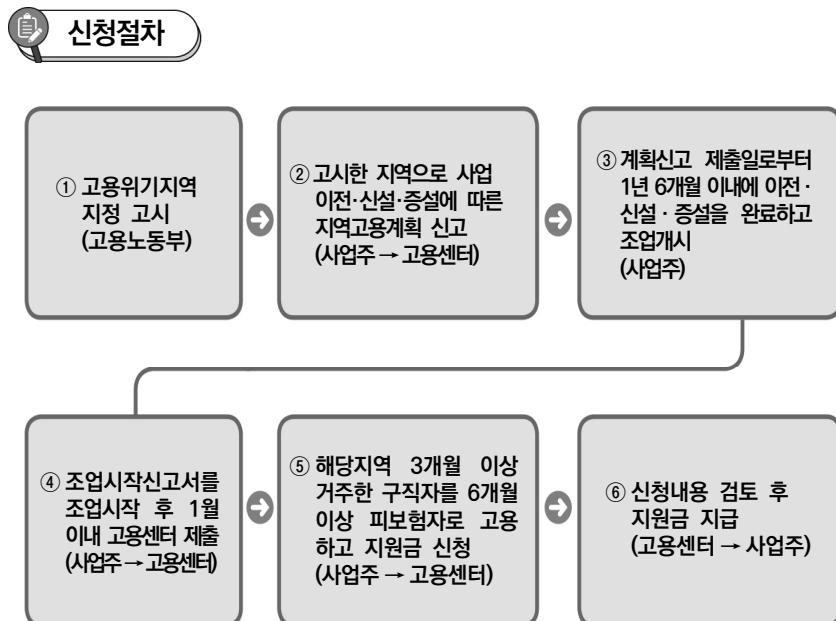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1일 상한액은 6.6만원)



지원요건

-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 지원 제외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지원 제외 사업: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VIII

참고사항

- 1.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2. 부정행위 조치
-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 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p>②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p>③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p>	<p>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p>								
<p>④ 상호조정비율 고시에 따라 지급</p>	<p>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0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상호조정비율</th> <th style="width: 70%;">지원금 또는 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70%</td> <td>「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td> </tr> <tr> <td>0%</td> <td>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td> </tr> <tr> <td>100%</td> <td>「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td> </tr> </tbody> </table>	상호조정비율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상호조정비율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10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p>⑤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p>	<p>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p>								
<p>⑥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p>	<p>⑥ 근로자가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p>								

2. 부정행위 조치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하는 행위
-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①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해당 지원금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또는 지급 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함

②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2020.8.28.>

추가징수 산정 기준		추가징수액
1.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그 밖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험약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또한, 부정행위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78조제3항)

③ 지급제한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④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처벌 신설 <2020.8.28.>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20.8.27. 이전은 형법상 사기죄 등 적용

✓ 2020.8.28. 이후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제한(향후 3개월~12개월) + 형사처벌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판단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300명 이하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2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 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IX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각종서식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 울 청	서울청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4층	서울특별시 종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33, 7339, 7370, 7373, 7377~9, 7394~5, 7908, 7910~11
	서울청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22, 4940, 4972, 4973, 4978, 4979, 4989, 4993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680, 4703, 4708~9, 4712~5, 4723, 4726, 4732~3, 4736, 4774, 4784, 4861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02-2142-892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2077-3410, 3422, 3473, 6002~5, 6014, 6034, 6047, 6055,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코레일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02-2639-2158, 2162, 2187~89, 2413, 2499, 2435, 2260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10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00, 1805, 1844 1861, 1863, 1868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릉85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2-9366, 9353, 9361, 9373, 9379, 9384~6, 9388~9, 9309, 9343, 9371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중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방합동청사 5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545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정제로 804 영산빌딩 2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641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4
	부천지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부천고용센터 별관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 8975, 8927 032-310-8843, 8852, 8854
	부천지청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39~ 031-999-0944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 7차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고용창출: 031-920-3976/ 3988/3997-8 고용유지, 고용안정: 031-920-3963-4/39 67/3981/3990 청년일자리도약: 031-920-3928/3960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구리시· 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강원도 철원군	고용안정, 고용유지: 031-828-0810/08 32-4/0838/ 0973/0976 고용촉진, 청년일자리도약: 031-828-0893/ 0975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64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정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이천시·여주시·양평군	031-739-3177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과천시 광명시·의왕시·군포시	031-463-0762~4, 0767, 0768, 3801, 3805, 3827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031-412-6940 ~6947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2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23, 1924, 1928, 1930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3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90, 1991, 1992, 199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60, 09 42~3,0967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03, 8645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57 033-371-6261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부 산 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 영도구·남구·부산진구· 연제구·사하구	051-860-1923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광안동)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10, 7216, 7245~7, 7249, 7255, 7286, 7118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051-330-9991, 9826, 9952, 9945, 9986, 9955, 9970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의령군· 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23-6, 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44, 6434~6440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2422
대 구 청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2~ 6756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055-650-1811~4, 1818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동구·북구· 군위군,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 청도군	053-667-600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DBS빌딩, 7층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	053-605-6450, 6460~4, 6466, 6477, 6479, 6488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9543, 9596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구청	대구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성주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50, 3051, 3052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16, 2532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054-440-3360~4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32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31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054-851-8063
광주청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 구례군·담양군·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3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1~8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 진안군·완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5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5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광 주 청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총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4, 0636-9, 0626, 0683, 0655,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17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52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061-530-2905, 2901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3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8661
대 전 청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2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브리핑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 보은군·증평군·옥천군· 영동군	043-230-6700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 아산시·예산군	041-620-7400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전 청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4035, 4037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9323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5, 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63, 5664
제주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	064-710-4462, 4470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고용복지'센터 서귀포지소	서귀포시 동흥로 186, 제주감귤농협 서귀포시지점 4층	서귀포시	064-710-4595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발 행 일 2025년 1월

발 행 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주 소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www.moel.go.kr

인 쇄 처 열림기획 044)868-5055